

<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>

◇ 해외입국 'PCR음성확인서' 제출기준이 '22년 1월 13일부터 강화됩니다.

* (기존) 출발일 72시간 이내 발급 → (변경) 출발일 72시간 이내 검사

1. "PCR 음성확인서" 제출 기준

| 구분 | 기준 |
|-------------|--|
| ① 검사방법 | ▶ NAATs(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)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* 유전자 증폭 검출(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, 항원(Antigen, AG), 항체(Antibody) 검출검사(RAT, ELISA 등)는 인정하지 않음 * 검사방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|
| ② 검사 및 발급시점 | ▶ 출발일 기준 72시간(3일)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* (예시) '22.1.14. 10:00시 출발 시 '22.1.11.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※ (~'22.1.12.) 출발일 기준 72시간을 초과하여 검사한 경우라도, 72시간(3일) 이내 '발급한 확인서라면 인정 → ('22.1.13.-)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 초과한 경우 불인정 |
| ③ 필수 기재 | ▶ 성명*, 생년월일**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*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(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) **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|
| ④ 검사결과 | ▶ 검사 결과가 '음성' 일 것 *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'미결장', '양성'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|
| ⑤ 발급언어 | ▶ '검사방법'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*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. (단,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) |
| ⑥ 검사기관 | ▶ 필리핀, 우즈베크의 경우,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※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/ 질병관리청(검역소) 홈페이지,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※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|

※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(<http://overseas.mofa.go.kr>)에서 해당국가별 입국 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"PCR 음성확인서" 제출 예외 대상

- **만 6세 미만**(입국일 기준) 영·유아(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)
- 인도적(장례식 참석)·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- 항공기 승무원
-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(본인입증책임)
-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("대한민국 선원수첩" 소지자에 한함)
- 미얀마에서 입국한 '내국인'·'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·직계존비속'(~'22.1.12.)
 * '22.1.13일부터 미얀마 發 내국인 등은 예외없이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

3.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

- (입국 전)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
 ※ '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'은 음성확인서 미소지(기준미달 포함)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
- (입국 후)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,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(입소비용 12만원/일 자부담 원칙) 후 5일간 자가격리, - 외국인은 입국불허
 ※ '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(싱가폴 선원 제외)'은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시에 10일간 자가격리 원칙